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863

2021. 10. 14.(목)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이옥규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 2021년 10월 1일

다. 회부일자 : 2021년 10월 5일

라. 상정일자 : 2021년 10월 14일

- 제39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이옥규 의원)

가. 제안사유

O 법령의 명칭과 약칭을 사용하고, 인용법령의 명칭변경 및 띄어쓰기를 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O 법령의 명칭과 약칭의 사용(안 제4조)
 - 영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 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 O 인용법령의 명칭변경에 따른 개정(안 제13조)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 O 인용법령 제목 띄어쓰기(안 제2조 및 안 제13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 「건설기술진흥법」→「건설기술 진흥법」
 -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 O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 호선 → 선출
 - 개의 → 개의(開議)
 - 없는 한 → 없으면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남범우)

○ 이번 개정조례안은 주요내용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법령의 명 칭과 약칭을 사용하고, 인용법령의 명칭변경 및 띄어쓰기를 하였 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대한 특별한 이격은 없음.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5. 토 론 요 지: "생략"
- 6.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선"을 "선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건설기술진흥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관련법령"을 "관련 법령"으로 한다.
-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위원회는 영 제108조"를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8조"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한다.
 -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 제5조제2항 중 "개의"를 "개의(開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하여 서"를 "해서"로 한다.

제5조의2제1항제2호 중 "당 사자"를 "당사자"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이내"를 "이하"로 한다.

제9조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10조제4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11조 본문 중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한다.

제13조 본문 중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를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했 혀

개 정 아

-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① (생 략)
-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사"라 한다)가 성별을 고려하 여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으 로 하다.
 - 1. · 2. (생략)
 - 3.「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 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 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 4.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 술자격 취득자
 - 5. 삭 제
 - 6. · 7. (생략)
- ③ (생 략)

-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① (현 행과 같음)
-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 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 출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 에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 사"라 한다)가 성별을 고려하 여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으 로 하다.
 - 1. · 2. (현행과 같음)
 -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 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 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 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 술자격 취득자
 - 6. · 7. (현행과 같음)
 - ③ (현행과 같음)

개 정 안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u>영 제1</u> <u>08조</u>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심의한다. 다만 긴급한 재 해복구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 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 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심의 대 상에서 제외한다.

1. ~ 3. (생 략) <신 설>

- 5.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 6. · 7. (생략)
- ② (생략)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08조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 1. ~ 3. (현행과 같음)
-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삭 제>

- 5. · 6. (현행 제6호 및 제7호 와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혀 했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 (생 략)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 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 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하다.
- ③ 위원장은 심의를 함에 있어 심 사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 는 위원을 심의에 참석하게 하 여서는 아니된다.

회피) ① (생 략)

- 1. (생략)
- 2. 배우자 또는 8촌 이내의 친 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심의 대상 안건의 당 사자인 경우
- ② · ③ (생략)

제6조(소위원회) ①・② (생 략)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 원장이 되며, 소위원회 위원은 문성을 갖춘 자를 위원장이 선

개 정 아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 (현 행과 같음)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 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 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은 심의를 함에 있어 심사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에 참석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 회피) ① (현행과 같음)

- 1. (현행과 같음)
- 2. 배우자 또는 8촌 이내의 친 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 2·3 (현행과 같음)

제6조(소위원회) ①·② (현행 과 같음)

원장이 되며,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내용과 특성을 고려하여 심의내용과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 위원 중 해당분야의 전 위원회 위원 중 해당분야의 전 문성을 갖춘 자를 위원장이 선

혀 했

임하되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다.

④ (생략)

제9조(심의결과 반영)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 여야 한다.

제10조(위워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 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워들 에게 알려야 한다.

- 1. ~ 3. (생 략)
- 4. 위원이 심의 안건과 관련하 여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 하지 아니한 경우
- 5. (생략)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 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북 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정 개 아

임하되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다.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심의결과 반영)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지 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 여야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 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 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 1. ~ 3. (현행과 같음)
- 4. 위원이 심의 안건과 관련하 여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 하지 않은 경우
- 5. (현행과 같음)
- 제11조(수당 등) 위윈회에 참석 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북 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현 행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충청북도재무관 및 계약담당 자, 관계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감독수행에 따른 실비지급) 주민참여감독자에게는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지급조례」(이하 "여비조례"라 한다)를 준용하여 감독 1일당일비(공무원 5급상당)를 예산의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특별히 현지교통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비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 정 안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충청북도재무관 및 계약담당 자, 관계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감독수행에 따른 실비지급) 주민참여감독자에게는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이하 "여비조례"라 한다)를 준용하여 감독 1일당 일비(공무원 5급상당)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특별히현지교통비 등이 필요하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여비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관련법령 발췌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 ③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감독)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상·하수도 사업, 마을 진입로 개설 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감독 외에 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감독자(이하 "주민참여감독자"라 한다)로 위촉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독업무 수행에 따른 실비(實費)를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9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계약심의위원
 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0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감독 대상
 공사는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개정 2012.4.10, 2016.9.13>
 - 1. 마을 진입로 확장 · 포장공사
 - 2. 배수로 설치공사
 -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 4. 보안등(保安燈) 공사
 - 5. 보도블록 설치공사

- 6. 도시 군계획도로 개설공사
- 7. 마을회관 공사
- 8. 공중화장실 공사
-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는 공사
- 10. 공원 공사
- 11.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개정 2016.
- 9.13>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제4항 제1호

○ 사 유

- 의안의 개정 내용이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법령 명칭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의 변경으로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
- 본 개정 조례안은 관계법령에 따른 인용법령 명칭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변경을 위한 개정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